



한국프랑스여성회 정관

2026 년 6 월 16 일 임시총회(AGE)에서 개정된 정관

www.cerclefrancocoreen.com

제 1 장 – 총칙

제 1 조 조직의 형태

본 정관에 의해 규정되는 협회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.

제 2 조 명칭

본 협회의 명칭은 '한국프랑스여성회'라 한다.

제 3 조 목적

본 협회는 한국인, 프랑스인 및 프랑스어권 여성이 프랑스어로 문화적 교류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서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소재지

본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-12, 03741 주한프랑스문화원에 둔다. 사무소의 이전은 임원의 의결로 행하되,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 조 존속기간

본 협회의 존속기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제 2 장 회원

제 6 조 회원의 자격

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
- **활동회원 (또는 일반회원):**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.

- **명예회원:** 주한 프랑스 대사의 여성 배우자는 당연직으로 본 단체의 명예회원이 된다. 명예회원은 고문의 역할로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, 임원진은 명예회원에게 회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이러한 고문의 역할이 명예회원의 임원회 출마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

제 7 조 가입

회원 가입은 재무 담당자가 정식으로 작성된 가입 신청서와 회비 납입을 확인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8 조 회비

회비는 본 협회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다. 회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내부규정에 정한다. 특별한 비용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, 추가적인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

본 협회의 가입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.

본 협회의 활동은 회원의 희망 사항과 자발적인 제안에 따라 매년 다르게 구성되며,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소모임을 구성하여 교류를 도모한다.

회원은 소모임 활동의 운영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특히 시간 엄수와 결석 시 사전 통지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회원은 내부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회원이 아닌 여성을 본 협회의 활동에 동반할 수 있다.

회원은 본 협회의 의사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
회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,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만한 갈등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.

제 10 조 월간 소식지

임원회는 회원들에게 차월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월간 소식지를 발송한다.

제 11 조 개인정보

본 협회는 협회의 행정 관리 및 소모임 활동 운영에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, 이는 회원을 식별하고 연락하기 위한 정보(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)에 한정된다.

본 협회가 수집한 개인정보 담당자는 내부규정을 통해 지정한다.

본 협회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관, 열람, 수정 및 파기에 관한 세부 규칙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2 조 회원의 자격 상실

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실된다.

1. 자진 탈퇴
2.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임원회의 제명 결의

제 3 장 재정 및 회계

제 13 조 협회의 재정

본 협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, 본 협회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(단, 수익 발생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그리고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된다.

본 협회는 '한국프랑스여성회'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(국민은행 531737-01-004565)를 보유한다.

제 14 조 회계

본 협회는 세입·세출에 관한 회계 장부를 상시 최신 상태로 기록·유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재산 관리 장부를 별도로 기록·유지한다.

제 4 장 운영

제 15 조 임원회의 구성

본 협회는 임원회의에 의해 운영되며,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다수결로 선출된다.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임원회는 다른 회원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 임기의 새로운 회장직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.

본 협회의 모든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지며, 자유롭게 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.

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:

- 최소 10 인 이상
- 최대 20 인 이하

임원의 구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:

- 회장 2 인,
- 재무 담당자 2 인,
- 서기 2 인,

각 보직은 한국인 회원 1 인과 프랑스어권 회원 1 인으로 구성한다.

회장 2 인은 모든 민사 행위에 있어 본 협회를 대표하며, 이를 행사할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.

본 협회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회장으로 필요충분하다.

서기 2 인은 서신 교환 및 기록 보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
재무 담당자 2 인은 협회의 자산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16 조 임원회의

임원회는 회장들의 발의 또는 본 협회 회원 최소 10 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.

임원회는 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유효하게 의결할 수 있다.

임원의 의결은 절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

제 17 조 내부규정

임원회가 제정한 내부규정은 본 정관의 내용을 구체화한다.

본 규정은 특히 회원 가입 및 자격 상실, 회비, 갈등 해결, 임원회 운영, 자산(예산, 결산, 적립금 등) 및 회원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포함한다.

제 5 장 총회

제 18 조 공통

총회는 본 협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. 총회의 의결 사항은 모든 회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.

총회 소집 통지는 서기들의 협조 하에 회장들이 발의해야 하며, 최소 15 일 이전에 발송되어야 하고 의사 안건을 포함해야 한다.

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. 수임인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.

모든 회원은 총회 개최 최소 1 개월 전까지 서기들에게 총회 상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는 임원회가 해당 요청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총회의 투표는 비밀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.

총회는 회원 전체의 3 분의 1 이상이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참석한 경우에 유효하게 성립한다.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, 회장들은 새로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
의결 사항을 유효하게 확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족수는 해당 결정의 성격 및 총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

제 19 조 정기총회

정기총회는 연 1 회 개최한다.

정기총회는 임원회의 활동 보고서 및 재무 담당자들의 결산 보고서를 승인한다.

정기총회는 보고서의 승인 여부를 의결하며, 회계 감사를 위하여 1 인 또는 수인의 회원을 선임할 수 있다.

정기총회는 또한 협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결하며, 협회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임원회에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다.

정기총회는 당해 연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한다.

정기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.

정기총회 의결은 절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며, 임원 선출의 경우는 상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.

제 20 조 임시총회

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, 본 협회 회원 최소 20 인 이상의 서면 요청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임시총회는 상정된 긴급한 안건들을 검토하고 결정한다.

임시총회는 정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의결할 수 있으며, 본 협회의 해산,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타 협회와의 합병, 또는 여타 협회 연합체로의 가입을 승인·결정할 수 있다.

임시총회의 의결은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유효하다.

제 6 장 부칙

제 21 조 등록

본 협회는 2010 년 4 월 서울시 남대문세무서에 등록번호 제 104-80-03392 호로 등록되었다.

제 22 조 정관의 언어

본 정관은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어로 번역되었다. 두 언어의 본문 간에 불일치나 해석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프랑스어 정관이 우선한다.

제 23 조 해산

협회가 해산할 경우, 임시총회는 협회 재산의 처분을 의결한다. 임시총회는 청산 절차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1 인 또는 수인의 청산인을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
제 24 조 효력 발생일

본 정관은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 본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모든 정관(1974 년 제정된 최초 정관 포함)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본 정관으로 대체된다.

* * * * *